

의안번호	제 152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5월 일 (제 300 회)

**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1년 5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5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충북개발연구원 제61차 정기이사회(2011.3.18) 개최 결과 연구원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명칭을 변경
  - 조례명을 “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
- 조문의 내용 중
  - “충북개발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”를 “충북발전연구원”으로 수정함(제1조)
  - “연구원의”를 “충북발전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”로, “충북개발연구원육성기금”을 “충북발전연구원육성기금”으로 수정함(제2조1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북개발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”를 “충북발전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2조1항 중 “연구원의”를 “충북발전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”로, “충북개발연구원육성기금”을 “충북발전연구원육성기금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	<u>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① 제1조(목적) 이 조 례는 <u>충북개발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</u> 의 재산운영 및 관리와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① 제1조(목적) 이 조 례는 <u>충북발전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와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
제2조(재산운영 및 관리) ① 연구 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 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<u>충북개발연구원육성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</u> 을 설치한다. ②~④ (생략)	제2조(재산운영 및 관리) ① <u>충북 발전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</u> 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<u>충북발전 연구원육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</u> 을 설치한다. ②~④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북개발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의 재산운영 및 관리와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산운영 및 관리)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개발연구원육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은 도와 관내 시·군(이하 "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과 그 외의 출연금,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.

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3조(이사의 추천) 연구원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